

[붙임] LH공사 「건설주택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검토서

구 분		협회검토의견	
점검기관선정 원칙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이하 ‘건진법’)의 정기안전점검은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①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②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점검 및 평가, ③주변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평가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기관을 선정.	
적정 점검기관 선정시 참여기술 구비요 건	책임기술자 요건	1) 책임기술자는 「건진법」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및 시공분야 특급기술자 이어야 함(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건축구조 및 건축시공분야 전문분야). 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경력을 소유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요건	1) 「건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품질관리, 건설안전 전문분야만 인정)의 기술자이어야 함. 2)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경력을 소유하여야 함. 3)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기술자 평가기준 (경력 실적)	공통사항	1)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름. 2) 기존 「건진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시 감안사항 : 「건진법」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법」 정밀안전진단과는 업무성격이 다르고, 진단기관이 「건진법」에 따른 점검기회를 각지 못한 회사가 많아 기회균등에 문제가 있으며, 특정 소수자만 참여기회를 갖게 되어 「건진법」 책임기술자 인력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기존요건을 갖춘자를 선별하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고, 경력 및 실적기준을 현재 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만점을 기존 「건진법」보다 50%수준으로 낮추어 많은 책임기술자를 양성하여야 함.)	
	책임기술자	1) 건축구조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자격자로서 업무영역이 건축구조계산, 구조물 안전성 해석을 주로 다룸. 2) 건축구조기술사는 기존 특급기술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자격, 학력, 경력, 평가에 의해 특급기술자에서 이미 평가받음. 3) 오히려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적합한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4) 경력 및 실적을 현재보다 낮추어야 함.(만점을 기존 건진법보다 50%수준으로 낮추어 많은 책임기술자를 양성해야 함.)	
	참여기술자	1) 기술자등급과 경력을 가지고 평가토록 해야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라도,기술자 등급은 높다고 해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자가 많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책임기술자 감독하에 점검한 경력이 많은 기술자가 중요하며, 이런 면에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나 참여기술자가 점검경력을 많이 쌓은 기술자가 높게 평가되어야 함. 따라서 앞으로 기술자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으로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제한하면 안되며, 평가시에는 등급보다는 경력에 평가비중을 높혀야 함.(정밀안전진단에서 평가시 제한 두지않음)	

구분	협회검토의견	
<p>참여회사 유사용역실적 평가기준작성시 고려사항</p>	<p>1) 참여회사 유사용역실적은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만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설계용역 업자를 선정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인정할 수 없듯이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업체 선정시 회사 실적에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만 고려함이 원칙.) 「건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적을 평가시 금액보다는 건수가 중요하며(금액은 문제가 있음), LH공사가 최근 4.5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정기안전점검업체 선정시 소수업체에 편중되어있고, 점검비용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잘못 운영된 실적을 개정된 「건진법」의 혜택을 입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임. 「건진법」 실적(건수, 금액 등)기준은 기존의 「건진법」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낮추어 이 분야에 실적이 없는 진단기관이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어야 함.</p>	
<p>신용도 고려사항</p>	<p>별도의견 없음</p>	
<p>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p>	<p>1) 배점을 낮추어야 함. : 이분야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 이라는 메뉴얼에 따른 점검이라서 기술개발이 업체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서 안됨. 회사실적의 10%수준으로 배점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왜냐하면, 정기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하는데 특허나 기술개발은 어디까지나 업체 선정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업체의 기술력을 배양토록하는 차원에서 나온 가산점의 성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정도만 배점을 고려함이 적정하며, 따라서 회사실적 배점을 높이고, 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은 이의 10%준으로 낮추는 것이 마땅함.(이미 이러한 실적을 충족한 회사는 충분히 기존의 「건진법」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중 혜택은 최소한 제한함이 합리적임.)</p>	
<p>가점부분</p>	<p>1) 안전점검 실적이 회사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한 회사로서 안전진단 기관 설립 후 10년이 넘는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구조설계실적(LH 기준안)이나 정밀안전진단실적을 가산점 요인이 될 수 없음.</p>	
<p>결론</p>	<p>1) 변경된 「건진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경험이 축적된 회사와 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적이 미흡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회를 봉쇄하는 과도한 제한이 안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진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함.</p>	